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금융소비자 보호 및 자본시장 관련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원 2명(5급 2명)의 직급을 상향 조정(4급 또는 5급 2명)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. 31. ~ 2. 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총리령 제 호

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“22”를 “24”로, 행정사무관 “61”을 “59”로 한다.

별표 1의2 중 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“22”를 “24”로, 행정사무관 “65”를 “63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]

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8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 감
	.		.		.	
	.		.		.	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			<u>22</u>		<u>24</u>	+2
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					
행정사무관			<u>61</u>		<u>59</u>	-2
	.		.		.	
	.		.		.	

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의2]

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8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 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<u>22</u>	<u>24</u>	+2
행정사무관	<u>65</u>	<u>63</u>	-2
·	·	·	
·	·	·	